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4
----------	----

제출연월일 : 2006. 09. 18.

제출자 : 유인환의원외 5인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05년 09월 27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 음

심 사 제 획

1. 활 동 목 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 사 안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안
-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활 동 기 간

- 2006년 9월 27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유인환의원, 이만재의원, 함명섭의원, 김영해의원, 김진석의원
최귀녀의원

5. 운영 계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고
9. 27(수)	제1차 조례특위 (14: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안 8.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